



대한체육회



수신자 시도체육회장

(경유)

제목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반행위 제재 방법 안내

1. 관련근거: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-4101(2022. 12. 09.)호
2. 위 호와 관련,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관 시군구체육회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관련 규정: 시도 및 시군구 회장선거관리규정
 - 제재 방법
 - 제33조(제재조치) 제1항 제1호에 대한 제재 조치
 -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,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통지
 -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: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. 단, 전자우편은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이 동의된 선거인에 한함
 -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: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.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
 - 제33조(제재조치) 제1항 제2호에 대한 제재 조치
 - 서면에 의한 중지, 경고 또는 시정명령: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,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통지. 끝.

대한체육회



수신자

★과장

배성욱

부장

전결 12/14

심상보

협조자

시행 지역체육부-4155 (2022-12-14)

접수 기획홍보부-2038 (2022. 12. 14.)

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
대한체육회)

/ <http://www.sports.or.kr>

전화 02-2144-8203 전송

/

/ 공개